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조정위원회의 최소 활동기간 명시〉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18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예지 · 강대식 · 김상훈 · 김선교 · 임종득 · 최수진
송석준 · 박덕흠 · 서천호 · 김용태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7. 3.

3. 회 부 일 : 2024. 7. 4.

※ 의안번호 : 13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로부터 90일로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이내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점(2019헌라5)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안전이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위한 안전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6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안전조정위원회의 최소한의 활동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안전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을 최소 “30일 이상”으로 명시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생략)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구성일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하고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전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 -----조정위원회의 구성일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후 재적 조정위원----- -----. -----.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안전조정제도는 여야간의 이견조정이 필요한 쟁점 안전에 대하여 여야간의 숙의와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소위 ‘국회선진화법’(2012. 5. 시행)을 통해 도입되었음.

「국회법」 제57조의2¹⁾에 따르면, 안전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조정위원 총 6인 중 3인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으로, 나머지 3인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으로 구성됨.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나, 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하여 활동기한을 90일보다 단축할 수 있음.

실제 제20대 국회 이후 구성되어 회의가 개최된 안전조정위원회의 운영 현황(2024. 7. 10. 기준)을 살펴보면, 38건의 안전조정위원회 중에서

- 1) 국회법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전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전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전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전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⑦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전을 표결한다.**
- ⑧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전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전(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전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전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전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최초 회의일부터 조정안 의결일이 2일 이내인 경우가 27건(71.05%)으로
안전조정위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단기간 내 조정안이 의결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참고자료 참조).

헌법재판소²⁾는 국회법상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조정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직후에 안전을 의결하는 것은 쟁점안전에 대하여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한 안전조정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에 대하여 최소한 30일간은 심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장함으로써, 쟁점안전에 대한 충분한 여야간의 숙의와 토론을 유도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2/3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경우에도 안전조정위원회 활동기한 최소 30일 동안에는 안전조정위원회에서

2) 국회법상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조정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국회법상 90일 또는 신속처리대상안전의 심사기간과 같은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이 이 사건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안전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조정안을 의결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시급한 안전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서는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30일에서 90일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에 대한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확정되지 않아,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및 활동종료 시점에 대한 법률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



○ 조정위원 선임 및 조정위원장 선출의 절차를 거쳐 실제 안전심사가 이루어진 안전조정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제20대 국회에서는 5건, 제21대 국회에서는 32건, 제22대 국회에서는 1건의 안전조정위원회가 운영되었음.

- 한편, 전체 안전조정위원회 38건 중 ① 최초 회의일 당일에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가 25건(65.8%)이고(노란색 음영), ②최초 회의일 다음 날에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가 2건(5.3%)으로 집계됨(초록색 음영)

[표] 제20대 국회 이후 국회의 안전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2024. 7. 10. 기준)

연번	대수	소관 상임위	안전	안전조정위 구성요구일	최초 회의일	조정안 의결일
1	20대	교문위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등	2016.11.25	2017. 1.16	2017. 1.17
2	20대	교육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19. 6. 26	2019. 7. 8	- *안전미의결 상태에서 활동기한 도래로 종료
3	20대	교육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019. 9.24	2019.10.30	- *안전미의결 상태에서 활동기한 도래로 종료
4	20대	행안위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019. 6.26	2019. 9. 6	2019. 9.23
5	20대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6	2019. 8. 27	2019. 8.28

연 번	대 수	소 관 상임 위	안 건	안전조정위 구성요구일	최 초 회의 일	조 정 안 의 결 일
6	21대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2. 7	2020.12. 8	2020.12. 8
7	21대	법사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 7	2020.12. 8	2020.12. 8
8	21대	법사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1. 4.26	2021. 4.26	2021. 4.26
9	21대	정무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 7	2020.12. 8	2020.12. 8
10	21대	정무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2020.12. 7	2020.12. 8	2020.12. 8
11	21대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2. 7	2020.12. 8	2020.12. 8
12	21대	정무위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2023.12.14	2023.12.14	2023.12.14
13	21대	기재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	2021.12. 8	2021.12.31	2022. 1. 4 *일부안건만 의결
14	21대	교육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1. 2.19	2021. 3. 4	2021. 5.13
15	21대	교육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8.19	2021. 8.19	2021. 8.19
16	21대	교육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8.19	2021. 8.19	2021. 8.19
17	21대	교육위	기초학력보장법안	2021. 8.19	2021. 8.19	2021. 8.19
18	21대	교육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2021. 8.19	2021. 8.19	2021. 8.19
19	21대	교육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8.19	2021. 8.19	2021. 8.19

연 번	대 수	소 관 상임위	안 건	안전조정위 구성요구일	최 초 회의일	조 정 안 의 결 일
20	21대	교육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8.19	2021. 8.19	2021. 8.19
21	21대	교육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8.19	2021. 8.19	2021. 8.19
22	21대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2023. 3.20	2023. 3.20	2023. 3.20
23	21대	교육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2.27	2023. 4.17	2023. 4.17
24	21대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6.24	2021. 6.28	2021. 7.20
25	21대	과방위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022.12. 1	2022.12. 1	2021.12. 1
26	21대	과방위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26.	2023. 9. 5.	- *안전미의결 상태에서 활동기한 도래로 종료
27	21대	행안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3.8.17.	2023.8.23.	2023.8.30.
28	21대	문체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16	2020.12.17	2020.12.17
29	21대	문체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8.17	2021. 8.18	2021. 8.18
30	21대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9.26	2022. 9.29	2022.10.12

연 번	대 수	소 관 상임 위	안 건	안전조정위 구성요구일	최 초 회의 일	조정안 의결 일
31	21대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2023.12.28	2024. 1. 9	2024. 1.15
32	21대	산자중기위	한국광업공단법안	2021. 2.23	2021. 2.23	2021. 2.23
33	21대	환노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12. 8	2020.12. 8	2020.12. 8
34	21대	환노위	기후위기대응법안 등	2021. 8.18	2021. 8.18	2021. 8.18
35	21대	환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등	2023. 2.15	2023. 2.17	2023. 2.17
36	21대	국토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2.26.	2023.12.27.	2023.12.27.
37	21대	정보위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2021. 3.15	2021. 6. 7	- * 조정대상안전이 조정위 의결없이 전체회의에서 의결
38	22대	과방위	한국방송공사 박민 사장 제415호 국회 임시회 제5차회의 불출석에 대한 고발의 건	2024. 6.25.	2024. 6.25.	2024. 6.25.

* 주1: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가 제출되어 실제 안전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위원선임 없이 90일이 경과한 경우,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별도의 위원선임 없이 기존에 구성된 안전위원회에서 해당 안전을 논의한 경우는 제외함

* 주2: 안전조정위 구성일은 안전조정위 구성 요구일을 기준으로 함

* 주3: 조정안 의결일은 안전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을 의미함

* 자료: 국회 회의록 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record>) 등 참고 후 작성